

#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1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31.

발의자 : 김진표 · 양기대 · 김주영

장철민 · 이수진 · 한병도

전혜숙 · 송기현 · 김철민

홍영표 · 김성주 · 이태규

조경태 · 金炳旭 · 윤영찬

서병수 · 김영식 의원

(17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챗GPT 등 생성형 · 대화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,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· 창의적 교육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'AI 디지털 교과서'를 개발하여 초 · 중등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등 '공교육의 디지털 전환' 정책을 수립 · 추진하고 있음.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의 수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,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

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.

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. 아울러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제고됨으로써 공교육 강화 및 교권 확립의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이에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%에서 4%로 조정하고,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·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초·중등 공교육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3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##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) ①

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,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.

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: 특별교부금 재원의 1,000분의 450

2.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: 특별교부금 재원의 1,000분의 22

3.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: 특별교부금 재원의 1,000분의 75
 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: 특별교부금 재원의 1,000분의 250
   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
    - 나.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
    - 다.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
-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,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
제2조(유효기간)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

가진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5조의3(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)</u> ① <u>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,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.</u></p> <p>1. 「지방재정법」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: 특별</p>

교부금 재원의 1,000분의 450

2.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

으로 과악할 수 없는 특별한  
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  
요가 있을 때: 특별교부금 재  
원의 1,000분의 225

3.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 
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 
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  
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  
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 
재정수요가 있는 때: 특별교  
부금 재원의 1,000분의 75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  
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  
요할 때: 특별교부금 재원의  
1,000분의 250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  
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  
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  
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 
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  
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

나.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  
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

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 
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 
있는 때

다.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  
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 
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 
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  
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  
요한 때

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  
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, 절  
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 
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  
통령령으로 정한다.